



감 사 원

바른감사
바른나라

수신 고용노동부장관(산재보상정책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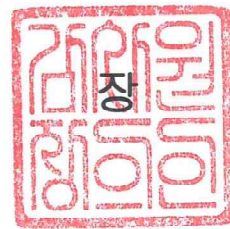
(경유)

제목 심사청구의 처리

1. 귀 부에서 2019. 10. 14.(산재보상정책과-4825) 우리 원에 보내신 청구인 [REDACTED] 주식회사(대표이사 [REDACTED])의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심리하고 불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처분청에도 위 결정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청구인이 이 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판결문 사본을 감사원(심사2담당관)으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심사결정서 등본 1건 1부. 끝.

감 사 원



부감사관 [REDACTED]

심사2담당관 [REDACTED]

협조자

시행 심사2담당관-594 (2019. 11. 4.)

접수

우 03050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삼청동 25-23)

/ www.bai.go.kr

전화번호 02-2011-3155

팩스번호 02-2011-2299

/

/ 비공개(1, 6)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류 번호 2019-심사-695

제 목 최초요양급여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REDACTED] 주식회사(대표이사 [REDACTED])
[REDACTED]
대리인 [REDACTED]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정 [REDACTED]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REDACTED]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REDACTED] 건설 주식회사(이하 “[REDACTED]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 [REDACTED] (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9. 3. 10. 07:00경 “[REDACTED] 토목공사” 현장¹⁾(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삼에 시멘트포대(40 kg/포) 약 610포를 옮겨 담는 중 통증이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있는 후 2019. 3. 16. “우측 상완부 이두박근 원위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9. 3. 26. 처분청에 요양급여(구분: 최초요양)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재해조사,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2019. 4. 22.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

1) [REDACTED]

양급여(구분: 최초요양) 지급을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재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19. 3. 10.부터 이 사건 현장 작업 종료일인 2019. 3. 14.까지 현장관리자에게 재해보고 없이 정상 근무를 한 점, 2019. 3. 10. 이 사건 현장에서 재해자와 같이 작업한 송동춘 등 동료 근로자 3명 중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던 점, 재해자가 작성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에 따르면 재해 시점이 작업 시작 전인 07:00경으로 되어 있고 요양 신청 구분에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 모두 체크한 사실을 미뤄볼 때 재해자가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현장에서 입은 것으로 보기에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REDACTED] 건설에 2018. 12. 14.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19. 3. 13.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 등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재해자 등 관련자의 진술내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관련자 등의 진술 및 조사 내용

구 분 (작성자)	내 용	날 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	▶ 2019. 3. 10. 이 사건 현장에서 포크레인 삽에 시멘트 포대 약 610포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통증 발생 ▶ 재해발생 일시 2019. 3. 10. 07:00경	2019. 3. 26.
진술서 (동료근로자)	▶ (동료근로자1) 본인은 재해자와 같이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에 집중을 하느라 재해자에게 신경쓸 겨를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모습을 본적이 없음	2019. 3. 16.
	▶ (동료근로자2) 본인은 재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고, 휴식시간에 같이 커피도 마시며 쉬었으나 재해자의 이상 증후를 느끼지 못하였음	2019. 3. 16.
	▶ (동료근로자3) 본인은 2019. 3. 11. 및 3. 12. 이 사건 현장에서 재해자가 작업 후 팔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음	2019. 3. 27.
	▶ (동료근로자4) 본인은 재해자가 작업 후 팔을 움직이는 동작이 불편해 보여 2019. 3. 12.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물어보니 재해자로부터 이 사건 현장 작업 중 통증이 왔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음	2019. 3. 27.
자술서 (재해자)	▶ 2019. 3. 10. 이 사건 현장에서 동료근로자 3명과 포크레인 삽에 시멘트 포대를 옮겨 담는 중 팔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하루나 이틀 정도 쉬면 통증이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하여 참고 일하였으나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19. 3. 15. 피엠씨(PMC) ■병원에 초진을 받고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2019. 4. 1.
보험가입자 의견서 (청구인)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3. 10.부터 작업 종료일인 2019. 3. 14.까지 현장관리인 등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없었음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재해자와 같이 작업한 3명의 동료근로자 중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자가 없음	2019. 4. 11.
재해조사서 (처분청)	▶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 2명의 진술이 확인되고, 2019. 3. 15. 재해자가 재해보고를 하였으며 자문의 자문결과 재해경위와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9. 4. 22.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은 [표 2]와 같다.

[표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구 분 (의료기관명)	내 용	날 짜
의무기록지 (병원)	▶ 내원일시: 2019. 3. 15. 15:57 ▶ 주증상: biceps distal tendon area tenderness ▶ 5일 전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일을 한 후 통증 악화, 현재 양치질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음 ▶ 내원 당시 LE, ME mild tenderness (tenderness 심하지 않다) ▶ 진단결과: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촬영 필요	2019. 3. 15.
의무기록지 (병원)	▶ 상병명: biceps distal tendon partial tear and inflammation ▶ premold splint (깁스) 유지	2019. 3. 16.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병원)	▶ 상병명: 우측 상완부 이두박근 원위부 부분 파열 ▶ 자기공명 영상장치 촬영결과 우측 이두박근 원위부 부분 파열 소견이 관찰되며 주위로 염증 소견 관찰됨	2019. 3. 25.
진료확인서 (병원)	▶ 재해자는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일을 과도하게 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작업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9. 3. 29.
자문의 소견서 (처분청)	▶ 상병명: 우측 상완부 이두박근 원위부 부분 파열 ▶ 의학자문 소견: 자기공명 영상장치 촬영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확인되며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19. 4. 18.

4) 2019. 3. 16. 재해자는 소속 회사인 건설에 출근하여 안전관리팀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한 후 공장 처리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019. 3. 25. 안전관리팀장은 재해자에게 연락하여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도록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자는 2019. 3. 26.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2)항” 및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재해자와 이 사건 현장에서 같이 작업하였던 2명의 동료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작업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재해자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PMC 박병원 등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 진료확인서에 기록된 수상 경위가 재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일치하는 점, ③ 처분청이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재해 여

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자문의사에게 자문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요양기간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문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재해자는 2019. 3. 15. 초진 의료기관인 [REDACTED]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아 2019. 3. 16. [REDACTED] 건설에 출근하여 안전관리팀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한 후 안전관리팀장과 이 사건 상병의 공상 처리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2019. 3. 25. 안전관리팀장이 재해자에게 연락하여 재해자의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제안한 것은 재해자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 11 . 04 .

이는 등본임
서기 2019년 11월 4일
감사원운영지원과장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7. (생략)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생략)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42조(자문의사)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43조(자문의사회)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자문의사회의를 둔다.

② 자문의사회의는 자문의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의사회의는 공단의 자문에 응하여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